

##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

<P>수용대상토지에 적용될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택지개발사업시행으로 지가가 동결된 관계로 개발 이익을 배제</P> <P>한 자연적인 지가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을 산출하여 이를 기타사항으로 참작한 </P> <P>감정평가는 적당한 것으로 수궁된다.<BR>(대법원 1993.03.09. 선고 92누9531 판결)<BR></P>